

# 국민취업지원제도 전행 관련 처분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사업 참여 중단 및 수급권 철회에 대한 처분 결정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23.

## 증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



- 건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결정 알림 공시송달
- 근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공시송달 내용
이0승	1992. 5. 30. (이하생략)	의정부시 녹양동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전행 관련 처분 결정 통보	구직촉진수당 부지급 3회 및 출식통지 2회에도 상담에 응하지 않아 수급권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에 대한 처분 결정 통보	동 서류를 2021년 6월 10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(폐문 부재)

- 공고기간 : 2021. 6. 23. ~ 2021. 7. 7.(15일간)
-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센터 서영미(Tel. 031-828-099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